



## 신베이 신주민 커뮤니티 의료지원 서비스

저희 신베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「신주민사랑프로젝트」 의료 지원 서비스를 시작 하오니, 신베이에서 거주하여, 혼인신고 후 대만 첫 입국 하여 6개월미만(국민건강보험 가입 전),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 비용 발생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자, 신베이에 소재한 호정사무소에서 의료지원금이 신청 가능하므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드립니다.

의료지원 원인 발생 후 , 또는 의료기관 진단비 청구서를 받으신 후 6개월 이내 청구하며,각 호정사무소에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.

### 지원대상:

신베이에 거주하는 신주민(국민의 배우자)본인, 혼인신고 후 첫 입국하여 6개월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 전,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 의료비 개인이 부담하는 자.

### 지원기준:

1. 의료비 자기부담금 NT\$10,000 이하 자,자기부담금의 50% 지급됩니다.
2. 의료비 자기부담금 NT\$10,000~20,000 이하 자, 자기부담금의 60% 지급됩니다,
3. 의료비 자기부담금 NT\$20,000~30,000 이하 자, 자기부담금의 70% 지급됩니다.
4. 의료비 자기부담금 NT\$30,000 이상 또는 특수상황 있는자 당국 신청승인 후 , 자기부담금의 80% 지급됩니다.
5. 신청 대상자,최대 NT\$50,000 까지 지원하게 됩니다.

### **접수방법:**

- 1.접수기간: 의료지원 원인 발생 후 또는 의료기관진단비 청구서를 받으신 후 **6개월** 이내 청구 제출합니다.본인이 부득이나 직접 접수 못 한 자는 위임 가능합니다.
- 2.접수기관: 신베이에 소재하고 있는 호정사무소에서 접수신청 후, 해당 호정사무소에서 심사 및 지급 처리합니다.
- 3.건강보험자격심사:접수 받은 호정사무소는, 해당 신주민이 **혼인신고 후 첫 입국 6개월이내** 및 건강보험가입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,신청자격을 승인합니다.
- 4.구비서류:
  - 가.신청서(신베이 민정국홈페이지:<https://www.ca.ntpc.gov.tw> 다운로드 또는 호정사무소에 발급됩니다.)
  - 나.건강보험공단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 원본
  - 다.건강보험공단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영수증 원본

라.등록증원본

마.본인명의로 된 금융기관 통장 사본

바.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위임장